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
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번호 196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5. 12. 19.
제 출 자 : 박승석 위원외 1인

1. 수정이유

재태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4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으로
조례안의 관련규정도 특별법(점용료 감면 유효기간의 근거법)과 동일하게 효력
을 갖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 부칙에 유효기간을 명시

2. 주요골자

○ “부칙”

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

“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

“제2조(유효기간)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 제5호 및 동조제2항 제4호는

201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”를 신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
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“부칙”

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

“제1조(시행일)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로

“제2조(유효기간)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 제5호 및 동조제2항 제4호는

201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”를 신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현행과 같음</p>	<p>부칙 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(유효기간) 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 제5호 및 동조제2항 제4호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불 신설</p>